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 방재상담

문 : 집섬보드를 건축물에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을 경우의 인정여부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답 : 건축법 제26조 제8호에 의한 건설부 고시 528호(85. 12. 2)에 의거 해당 층별로 필요한 내화시간을 갖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참고로 고시 528호 내화구조의 성능시험 기준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가.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에서는 통상 화재시의 가열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층별 부위별	층별	최상층에서	최상층에서	최상층에서
		부터 5층 까지	세에서 층수가 6 이상이고 14이내의 층	부터 15층 이 상
외벽중 비내력벽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1	1	1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	1/2	1/2	1/2
외벽중 내력벽 간막이벽, 바닥		1	2	2
기둥, 보		1	2	3
지붕		1/2	1/2	1/2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재료 또는 건축부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는 것일 것.

<질의자 : 서울건축, 응답자 : 위험관리부>

문 : 난연성 도료의 성능과 법 적용상 인정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난연성 도료는 화재의 연소속도의 지연 및 화염예방에 효과적으로 방염처리 대상물 또는 가연성의 간막이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방염처리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법상 불연재료는 인

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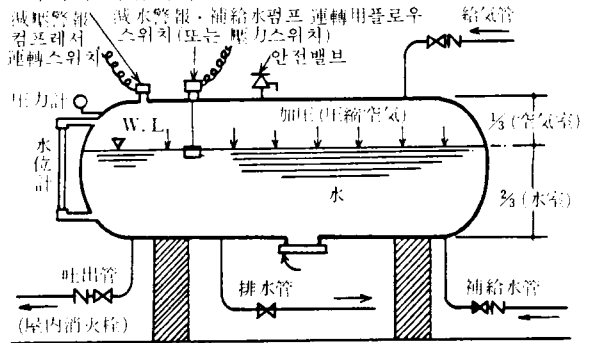
<질의자 : (주)다림무역, 응답자 : 위험관리부>

문 :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일반적으로 압력수조방식은 탱크내에 물을 압입하고 탱크내의 압축된 공기의 압력에 의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서, 탱크의 설치 장소에 따르는 이점이 있으나 탱크용량의 2/3밖에 저수할 수 없고, 방수에 따라서 수압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수량 모두를 유효수량으로 볼 수 없는 결점이 있습니다.

- 1) 압력탱크의 필요한 압력은 소화전의 규정 방수압 1.7kg/cm²에 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과, 낙차의 환산 수두압을 더하여야 하며
- 2) 압력탱크는 압축공기가 물에 혼입되어 기압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실과 수실 상호간을 격막으로 분리하고 공기실에는 사전에 압축공기를 넣어 두어야 하며
- 3) 압력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압력수조의 구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壓力水槽의 構造]

● 보험상담

문 : 보험요율 체제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요율 변동이 있습니까?

답 : 그간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몇차례에 걸쳐 보험요율이 인하된 바 있으며 현재 특수건물의 업종에 따라 적용요율의 10%에서 30%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86. 9. 15에 개정된 요율서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건물의 구조급수 산정에서 건물주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장의 경우에는 복합구조의 건물일때, 우열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므로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 협진염직, 응답자 : 기획조정실>

문 : 개발리스의 경우 특수건물 이외의 부분물건에 대하여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답 : 특수건물의 경우는 매년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건물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타 건물에 비하여 화재예방활동이 활발하여 화재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특수건물에만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비특수건물이라도 소화설비규정(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발행)에 준하도록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할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소화설비할인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 : 한국개발리스, 응답자 : 본협회 대전지부>

문 : 본인의 건물은 특수건물로서 관할관청의 감독에 의해 준공을 필하였으며 귀 협회로부터 정기안전점검등을 받아 불량사항을 즉시 시정 보완하는 등 화재발생요인의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가치의 하락등 감가상각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관계기관에 질의하였던 바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보험료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소화설비에 대한 보험료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답 : ① 질의사항중 건물경년및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에 의한 보험료 할인에 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특수건물 시가결정기준액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동 건물의 용도별, 규모

별, 구조 형태별, 공법,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를 포함한 현 상태의 건물을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동 건물의 시가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칙이며, 동 법률에서도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특수건물은 그 동안의 이재율을 분석, 일반 보험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화재보험요율에 10%~30% 할인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특수건물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③ 요청하신 소화설비할인에 대해서는 소화설비비규정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화설비할인검사는 본협회의 안전점검시 병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법상으로는 적절하더라도 소화설비규정이 법규내용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할인을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미달사항을 보완하셔서 협회에 재점검을 의뢰하시면 즉시 소화설비할인 검사를 실시하여 동 검사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자 : 광진 B/D, 응답자 : 보험 1부>

문 :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을 설명하고 보상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 : ①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은 원·부자재 및 상품 재고품과 같이 매월 재고가액이 일정치 않고 시세의 변동이 심한 동산에 대하여 1년중의 최고예상 재고가액을 보상한도액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시점의 재고가액을 보험자에게 통지키로 약정하여 연보험료의 75%를 잠정보험료 조로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만기시에는 통지된 내용의 원별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고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징하게 됩니다.

② 이재발생시에는 조사 결과 그간 보험자에게 통지한 가액이 실제가액대로 성실하게 통지된 것이 확인되면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며 실제의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비례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최종 통지재고가액}}{\text{실제재고가액}}$$

<질의자 : (주) 금성사 관재부, 응답자 : 보험 1부 >